

##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5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9. 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### □ 제정이유

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체육활동 여건제공으로 우수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직장체육진흥 활성화와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직장의 명예선양 및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직장운동경기부라함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함 -----(안 제2조)
- 나.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, 감독, 지도자, 선수로 조직운영하며 단장은 시장,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함 -----(안 제3조)
- 다. 지도자 및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함 -(안 제5조)
- 라.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, 수당,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,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함 -----(안 제8조)

##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, 감독, 지도자, 선수로 조직 운영한다.

② 단장은 시장이 되고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.

제4조(자격기준)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임용) 지도자 및 선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자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.

제6조(복무)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.

제7조(해임) 지도자 및 선수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.

1.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
2.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
3.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4.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
5. 제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
6.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

제8조(급여등의 지급) ①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,수당,훈련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 별 표 )

## 지도자 및 선수 자격기준

### 1. 지도자

가. 경기지도자 자격증 1·2급 소지자

나.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자로 4년이상 경기경력이 있는자

다.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자

라. 고졸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 5년이상 경기경력이 있거나 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자

### 2. 선수

가.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중 고졸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2년이상 선수경력자